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처리를 권고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안 제7조)
-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안 제8조)
-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생활소음저감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산먼지에도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3조는 및 제4조는 구청장,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5조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지역 사전심사 규정과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6조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7조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8조는 특정공사장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
 - 안 제9조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0조는 사업자의 자율참여 권고에 대해 사항 규정
- 검토 결과
 - 우리 구의 경우 해마다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해 불편 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건설 수요나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의 폭이 있을 수는 있으나 특히 2023년은 코로나19의 사실상 종식으로 수많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아울러 영등포는 재개발과 지식산업센터 건설 등이 다수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생활소음 등에 대한 노출 횟수가 더욱 빈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해 특정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사전심사 실시하고, 생활소음과 진동의 측정 및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를 규정으로 명시화함. 아울러 생활소음 등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특별관리공사장에 대

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 우리 구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신고를 통해 발생신고 사항과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를 지도·점검(중점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에어방음벽 설치, 휴무일 기동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제명을 변경하고 저감 실천 범위 확대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행정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대한 의무감과 동시에 자율적인 참여는 구민들의 기본권 보장 확보로 이어져 구민들의 불편이 감소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근거하여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404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 의 자: 전승관, 이성수, 이순우
유승용 의원(4인)

1. 제안이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안 제7조)
- 나.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안 제8조)
- 다.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안 제9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4.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5. “특별관리공사장”이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이하 “생활소음 등”이라 한다)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소음 등의 저감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 등 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생활소음 등 저감대책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

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소음측정지점 사전 조사, 소음의 관리 목표 설정, 소음측정기기 설치지점 선정 및 소음도 측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제9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①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일부 또는 전부 적용

2. 건축물축조공사장의 건물바닥 1일 2회 이상 청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조치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